

제134회 임시회  
광진구의회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2010. 2. 1.

복지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814
----------	-----

2010. 2. 1.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제안자 : 윤호영 의원 외 4인

## 2. 제정사유

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선행을 널리 기려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구에 거주하는 구민 및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나 의상자가 된 때

### 나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구가 설치·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
- 구가 설치·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

### 다. 영예의 존중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이나 구 단위 행사시 우선 초청 및 공적소개, 공적비 설치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

라.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의사상자 유족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인정토록 함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함

##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광진구민 등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하다 사망 또는 신체에 부상을 입은 분의 유족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인 예우 이외에 추가로 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
조례구성은

- 제1조 목적에서 제8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

주요 내용으로는

-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내용을
- 제3조에서는 구민 또는 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 구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로 인해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되는 적용범위에 대하여
- 제4조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 및 그 가족에게는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주차요금의 감면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
- 제5조는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예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-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원신청과 법률준용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
- 제8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규정과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.

○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위협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이외에 구 차원에서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들의 귀감으로 삼고, 의로운 국민의 영예를 존중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됨